

1. 개정이유

「공소청법」의 제정 및 「형사소송법」의 개정(2026. 10. 2.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설치됨에 따라 규칙의 제명과 기관 명칭·용어를 정비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절차의 전면 전자화에 맞추어 전자기록·전자재판서의 보존·대출·폐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12에 따라 고소인등이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규칙의 제명 및 기관 명칭·용어 정비(제명, 제1조, 제2조제1호가목·나목·제3호·제8호, 제5조, 제8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제1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1항, 제20조의2, 제25조제1항, 제29조제5항·제6항, 제30조제1항, 제32조)
- 나. 인용 규칙의 명칭 및 조항 정비(제2조제1호의4 가목·다목·라목·마목·바목, 제5조제2항제2호나목, 제14조, 제15조제2항 개정, 제2조제1호의4 나목 삭제)
- 다. 전자기록 및 전자재판서의 정의 신설과 근거 법률이 폐지된 정의 규정의 정비(제2조제1호의3·제2호 개정, 같은 조 제2호의2 삭제, 제3조제3호 신설)
- 라. 전자기록보존시스템의 정의 신설(제2조제9호 신설)

- 마. 전자약식사건 근거 법률 폐지 반영 및 전자기록 등에 대한 준용규정 신설(제9조의2 · 제11조의2 · 제19조의2 개정, 제29조의3 · 제30조제3항 삭제, 제33조 신설)
- 바. 전자화대상문서의 폐기에 관한 근거 마련(제30조제4항 신설)
- 사. 고소인등의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관계 기록 열람 · 등사 신청 절차 신설(제20조의2제4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 제2항 신설 · 제3항)
- 아. 별지서식의 정비(별지 제6호의6서식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 라. 기 타 : 1)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9. . ~ 9.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 폐지 등, 없음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공소청보존사무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검찰청에서”를 “공소청에서”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수사, 재판 등에 관한 문서”를 “수사, 공소 제기, 재판 등에 관한 문서”로 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검찰청에서”를 “공소청에서”로 한다.

제2조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의3. “전자기록”이란 전자적으로 기록된 전자문서와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등재된 전자화문서를 사건별로 모아둔 것으로,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사건 기록을 말한다

제2조제1호의4가목 및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나목을 삭제한다.

가.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1호의 불송치-수사중 지기록접수서

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6호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서

라.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7호의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마.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70호의 재수사요구기록 검토결과서

바.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72호의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

제2조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자문서로 작성된 것(이하 “전자재판서”라 한다)을 포함한다.

제2조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사사건”을 “조사사건”으로, “진정·내사·수사·시정사건기록”을 “진정·내사·조사·시정사건기록”으로 하고, “결정·처리 생성 문서 및 재판서”를 “결정·처리 생성 문서, 전자기록 및 재판서”로 한다.

제2조제8호 중 “검찰기록물관리시스템”을 “공소청기록물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자기록보존시스템”이란 전자기록의 보존·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내에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제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자기록

제5조제1항 중 “검찰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정·내사·수사·시정사건기록”을 “진정·내사·조사·시정사건기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사사건”을 “조사사건”으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수사사건”을 “조사사건”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35조제1항제3호”를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3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진정·내사·수사·시정사건기록”을 “진정·내사·조사·시정사건기록”으로,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을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으로 한다.

제8조제4항 단서 중 “검찰업무”를 “공소청 업무”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전자기록의 보존) ① 확정된 전자기록은 전자기록보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다만, 전자화대상문서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만료된 때에 제30조에 따라 폐기한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기록을 보존할 때 전자기록보존시스템에

그 확정연월일 및 보존종료연도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전자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검찰업무”를 “공소청 업무”로 한다.

제11조의2의 제목을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에서 “(불기소사건 전자기록의 보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불기소사건에 대한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이하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이라 한다)”을 “불기소사건에 대한 전자기록(이하 “불기소사건 전자기록”이라 한다)”으로, “시스템”을 “전자기록보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을 “불기소사건 전자기록”으로, “시스템”을 “전자기록보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을 “불기소사건 전자기록”으로 한다.

제14조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3호”를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3호”로, “같은 항 제64호”를 “같은 항 제64호”로 한다.

제4장의 제목을 “진정·내사·조사·시정사건기록의 보존”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수사사건기록”을 “조사사건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사사건”을 각각 “조사사건”으로, “진정·내사·수사사건기록”을 각각 “진정·내사·조사사건기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35조제1항제3호”를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3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수사사건”을 “조사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소속 검찰청의 장”을 “소속 공소청의 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진정·내사·수사사건기록표지”를 “진정·내사·조사사건기록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진정·내사·수사사건기록부”를 “진정·내사·조사사건기록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진정·내사·수사사건기록”을 “진정·내사·조사사건기록”으로, “진정·내사·수사사건부”를 “진정·내사·조사사건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진정·내사·수사사건기록”을 “진정·내사·조사사건기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진정·내사·수사사건기록부”를 “진정·내사·조사사건기록부”로, “진정·내사·수사사건기록”을 “진정·내사·조사사건기록”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단서 중 “소속 검찰청의 장”을 “소속 공소청의 장”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2(전자재판서의 보존절차)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재판서를 해당 전자기록과 함께 제18조에 따른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영구 또는 준영구로 보존하여야 하는 전자재판서는 전자기록에서 발췌하여 별도의 보존편철에 편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0조의2의 제목을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에서 “(검토 중

기록 등의 열람·등사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사사건 및 수사 중인 사건”을 “조사사건 및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해 검사가 검토 중인 사건”으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45조의1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에 따른다.

1.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제21조제3항 중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을 “허가하지 않거나 법 제245조의12제3항에 따라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불허(제한)통지서에”를 “재판 확정기록 열람·등사 불허(제한)통지서, 별지 제6호의6서식에 따른 열람·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에”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조의2”를 “제20조의2(제4항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는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수사서류 열람·등사의 신청에 대하여는 법 제245조의1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중 “소속검찰청(지청의 경우에는 소속지방검찰청을 말한다)”을 “소속공소청(지청의 경우에는 소속지방공소청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9조제5항 중 “1월이상”을 “1개월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소속검찰청의 장”을 “소속 공소청의 장”으로 하며, “처리하여야 한다”를 “처리한다”로 한다.

제29조의3을 삭제한다.

제30조제1항 중 “소속검찰청의 장”을 “소속공소청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자화대상문서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만료된 때에 제1항의 절차에 따라 폐기한다.

제32조 중 “검찰기록물관리시스템”을 “공소청기록물관리시스템 및 전자기록보존시스템”으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전자기록 등에 대한 적용) 전자기록 및 전자재판서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7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절차는 전자기록보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

서식부터 별지 제6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 서식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중 ‘수사’를 ‘조사’로 한다.

별지 제6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존기록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검찰청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은 그에 대응하는 공소청 또는 지청이 이 규칙에 따라 보존하는 것으로 본다.

○○지방공소청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발 신 ○○지방공소청
검 사 (인)
제 목 열람 · 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제4항에 따라 귀하의 열람 · 등사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허가(조건부 허가) 또는 사용 목적을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서류·물건의 목록 (별지순번 또는 면수)	열람 · 등사의 불허가(조건부 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의 사유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제2항 단서 및 제59조의2제2항제2호)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제2항 단서 및 제59조의2제2항제3호)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2항 단서 및 제59조의2제2항제4호)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제2항 단서 및 제59조의2제2항제5호)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합니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제2항 단서 및 제59조의2제2항제6호)
	수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음(「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제2항 단서)
	그 밖의 조건부 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사유(「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3항: - 11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검찰보존사무규칙</u>	<u>공소정보존사무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기록 · 재판서 기타 <u>검찰청</u> 에서 처리 된 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1조(목적) ----- ----- <u>공소청</u> ----- ----- -----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건기록"이란 다음 각 목의 서류 등을 말한다. 가. <u>수사, 재판</u> 등에 관한 문서 와 기록,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도면·사진·디 스크·테이프·필름·슬라 이드·영상녹화물·전자기 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 함한다) 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 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	제2조(정의) ----- -----. 1. ----- -----. 가. <u>수사, 공소 제기, 재판</u> --- ----- ----- ----- ----- ----- 나. ----- ----- -----

준칙"이라 한다) 제45조제1
항 및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록 및 관계 서류의 등본
[「형사소송법」(이하 "법"
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반환
하지 않고 검찰청에서 보존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의2. (생략)

1의3.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이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형사사법절차 전자
화 촉진법」 제2조제4호의 형
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
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
자적인 형태로 작성·관리되
는 사건기록을 말한다.

1의4. “결정·처리 생성 문서”
란 검사가 작성한 다음 각 목
의 문서를 말한다.

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321조제1항제1호의 불송치
-수사중지기록접수서

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 공소청 -----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전자기록”이란 전자적으
로 기록된 전자문서와 전자적
인 형태로 변환하여 등재된
전자화문서를 사건별로 모아
둔 것으로, 「형사사법절차 전
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
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관리
되는 사건기록을 말한다

1의4. -----

-----.

가.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1호의 불송
치-수사중지기록접수서

<삭 제>

321조제1항제9호의 수사경
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
서

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321조제1항제66호의 보완
수사요구 결정서

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321조제1항제67호의 불송
치기록 검토결과서

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321조제1항제70호의 재수
사요청기록 검토결과서

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321조제1항제72호의 수사
중지기록 검토결과서

사. (생략)

2. “재판서”란 판결·결정·명
령의 재판을 기재한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 날인
한 원본(법 제46조 단서의 등
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후단 신설>

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6호의 보
완수사요구 결정서

라.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7호의 불
송치기록 검토결과서

마.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70호의 재
수사요구기록 검토결과서

바.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72호의 수
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

사. (현행과 같음)

2. -----

-----.

이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
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절차전자문
서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에 따라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2의2. “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 명령문”이란 「약식절차 등에 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 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자 문서로 작성된 재판서를 말한 다.

3. “보존”이란 완결된 사건기록 [진정사건, 내사사건, 수사사 건 및 시정사건의 사건기록 (이하 “진정·내사·수사·시 정사건기록”이라 한다)을 포 함한다], 결정·처리 생성 문 서 및 재판서를 이 규칙에 따 른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 7. (생 략)

8. “검찰기록물관리시스템”이란 사건기록, 결정·처리 생성 문 서 및 재판서 등의 보존·관 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 터베이스 등을 결합시켜 구축

전자문서로 작성한 재판서(이하 “전자재판서”라 한다)를 포 함한다.

<삭 제>

3. -----
----- 조사사 건 -----
----- 진정·내사·조사·시 정사건기록-----
----- 결정·처리 생성 문 서, 전자기록 및 재판서-----

-----.

4. ~ 7. (현행과 같음)

8. 공소청기록물관리시스템---

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신 설>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한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2. (생략)

<신 설>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① 사건기록은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② 진정·내사·수사·시정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보존한다.

1. 진정사건, 내사사건, 수사사건 및 시정사건을 종결한 경우: 해당 사건을 종결한 검찰청

2. 다음 각 목의 경우: 형사사건 기록보존청

-----.

9. “전자기록보존시스템”이란 전자기록의 보존·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내에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

1. 2. (현행과 같음)

3. 전자기록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①-----

--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

② 진정·내사·조사·시정사건기록-----
-----.

1. ----- 조사사건

----- 공소청

2. -----

가. 진정사건, 내사사건 및 수
사사건을 입건처리한 경우
나. 시정사건을 「검찰사건사
무규칙」 제235조제1항제3
호에 따라 시정종결(송치)
한 경우

③ 결정·처리 생성 문서는 해
당 사건에 대하여 결정하거나
해당 기록을 처리한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제8조 및 제10조(제16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존기간이 영구·준영구
· 30년에 해당하는 사건기록 및
진정·내사·수사·시정사건기
록은 대검찰청에서 보존한다.

⑤ 재판서 중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는 대검찰청에서 보존하
고, 그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
과 함께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제8조(보존기간) ① ~ ③ (생
략)

④ 무죄, 면소, 형의면제, 공소기

가. ----- 조
사사건-----

나. ----- 「공소청사건사
무규칙」 제235조제1항제3
호-----

③ -----

----- 공소청-----
-----.

④ -----

진정·내사·조사·시정사건기
록-----
--- 공소청-----.

⑤ -----
----- 공소청-----

-----.

제8조(보존기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공소청 업무

제9조의2(전자기록의 보존) ① 확

정된 전자기록은 전자기록보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다만, 전자화대상문서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만료된 때에 제30조에 따라 폐기한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기
록을 보존할 때 전자기록보존시
스템에 그 확정연월일 및 보존
종료연도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전자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
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보존기간) ①-----

[illegible]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불기소사건 전자기록
의 보존) ① -----
----- 전자기록(이하 “불기소
사건 전자기록”이라 한다)은 전
자기록보존시스템을 -----

-----.

② -----
 --- 불기소사건전자기록-----
 -- 전자기록보존시스템-----

보존기간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4조(송치결정서 및 사건수리통지서 보존) 송치결정서(「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3호의 사건이송·이첩결정서 및 같은 항 제64호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 등을 포함한다)는 사건수리통지서와 합철한 후,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하여 보존한다.

제4장

진정·내사·수사·시정사건기록의 보존

제15조(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내사·수사사건기록의 보존) ①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사건, 내사사건 및 수사사건의 사건기록(이하 “진정·내사·수사사건기록”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진

-----.

③ 불기소사건 전자기록-----

-----.

제14조(송치결정서 및 사건수리통지서 보존)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3호-----
----- 같은 항 제64호-----

-----.

제4장

진정·내사·조사·시정사건기록의 보존

제15조(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내사·조사사건기록의 보존) ① -----
----- 조사사건-----
-----진정·내사·조사사건기록-----
-----.

정사건, 내사사건 및 수사사건 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된 경우에는 그 기록의 일부만을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하고, 나머지는 진정·내사·수사사건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정종결(송치)로 종결된 시정사건의 기록을 보존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6조(보존기간) ① (생략)

② 내사사건 및 수사사건의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시정사건의 사건기록(이하 “시정사건기록”이라 한다)은 3년간 보존한다. 다만, 소속 검찰청의 장은 중요한 사건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보존절차) ① 사건사무담당 직원은 진정·내사·수사사건기록표지의 우측상단 여백에 기

-----조사사건

-----.

-----진정·내사·조사사건기

록-----

-----.

②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35조제1항제3호-----

-----.

제16조(보존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조사사건-----

-----.

③ -----

-----.

-----소속 공소청의 장-----

-----.

제17조(보존절차) ①-----

-----진정·내사·조사사건기

록표지-----

록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보존기간과 보존종료연도를 입력하여 출력하는 것으로 그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기록을 보존할 때에는 보존종별 및 보존종료 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표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진정·내사·수사사건기록부 비고란에 “○년○월○년보존”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입건처리된 진정·내사·수사사건기록의 경우에는 진정·내사·수사사건부 비고란에 “형사사건기록에 합철”이라 표시한다.

④연간 보존하여야 할 진정·내사·수사사건기록의 양이 적어 제2항에 따른 질 구분과 질번호 부여 등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

-----.

②-----

-----,
----- 진정·내사·조사사건기록부 -----

-----.

③-----
--- 진정·내사·조사사건기록
----- 진정·내사·조사사건부 -----
-----.

④----- 진정·내사·조사사건기록-----

이를 생략하고 별도의 문서철
속에 넣어 보존할 수 있다.

⑤ 시정사건기록의 보존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진정·내사·수사사건기록부”
는 “시정사건부”로, “진정·내
사·수사사건기록”은 “시정사
건기록”으로 본다.

제17조의2(결정·처리 생성 문서
의 보존기간) ① 결정·처리 생
성 문서는 해당 사건 또는 기록
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소속 검찰청의
장은 중요한 사건이거나 그 밖
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9조(보존절차) ① ~ ③ (생
략)

④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의 아래 여백에 제1심법
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사건번
호와 수형인 명부의 책수 및 정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⑤ -----

-----.
--진정·내사·조사사건기록--
-----진정·
내사·조사사건기록-----
-----.

제17조의2(결정·처리 생성 문서
의 보존기간) ① -----

-----공소청의
장 또는 지청장-----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보존절차)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

----- 공소청 -----

-----.

⑤ ~ ⑧ (생 략)

제19조의2(전자적 처리사건의 약 식명령문 보존절차)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의 약 식명령문을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일부로서 보존하되, 약 식명령문만을 검색하거나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신청) ①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에 따른다.

②·③ (생 략)

제20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사준칙 제69조제1항 및 제5항(수사준칙 제1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진정사

⑤ ~⑧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전자재판서의 보존절차) -----
----- 전자재판서를 해당 전자기록과 함께 제18조에 따른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영구 또는 준영구로 보존하여야 하는 전자재판서는 전자기록에서 발췌하여 별도의 보존편철에 편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신청) ① -----

---- 공소청-----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 ① -----

건 · 내사사건 · 지정사건 · 수사
사건 및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녹음
 물 및 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 등사를 신
 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
 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별
 지 제5호의3서식의 사건기록열
 람 · 등사신청서에 따른다.

<신 설>

제21조(허가여부의 결정 등) ① ·
 ② (생 략)

-----조사
사건 및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해 검사가 검토 중인 -----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45조의12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위하
여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 등
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건
기록열람 · 등사신청서에 따른
다.

1. 고소인 · 고발인 · 피해자 또
는 그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
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로서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
서를 제출한 사람

제21조(허가여부의 결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검사는 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통지서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불허(제한)통지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④ (생략)

제2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의 제한) ① 검사는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른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의 신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수사준칙 제69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 10. (생략)

③-----
 허가하지 않거나 법 제245조의1 2제3항에 따라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불허(제한)통지서, 별지 제6호의6서식에 따른 열람·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의 제한) ① ---- 제20조의2(제4항은 제외한다) -----

 -----.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생 략)

제25조(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 등) ①검사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검찰청 (지청의 경우에는 소속지방검찰청을 말한다)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9조(기록의 대출) ① ~ ④ (생 략)

⑤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보존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보존기록에 대한 대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보존절차를 종료한 후 대출하여야 하고 1월이상 장기로 대출한 기록은 수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수사서류 열람·등사의 신청에 대하여는 법 제245조의1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5조(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 등) ①-----

----- 소속공소청
(지청의 경우에는 소속지방공소청을 말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기록의 대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1개월 이상

-----.

⑥보존사무담당직원은 청외로 부터 기록 대출 또는 송부요청 이 있는 때에는 소속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대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⑦ (생 략)

제29조의3(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대출) ①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을 대출하려는 검찰청 소속 직원은 시스템에 대출사유를 입력한 후 해당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열람·출력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중인 경우에는 수사검사의 승인을, 재판중인 경우에는 공판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출사유를 입력할 때에는 대출이 필요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관련된 사건의 사건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사검사 또는 공판검사는 시스템에 그

⑥-----

----- 소속 공소청의 장-----

----- 처리한다.

⑦ (현행과 같음)

<삭 제>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④ 다른 청에서 제5조에 따라 보존하고 있는 전자적 처리사건 기록을 대출하려는 검찰청 소속 직원은 문서에 의하여 그 전자적 처리사건기록보존청에 대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사건기록보존청 소속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소속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대출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기록의 폐기) ①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해당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은 해당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폐기

제30조(기록의 폐기) ① -----

----- 소속공소청의 장-----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한다.

<신 설>

제32조(각종 대장의 전자적 처리)
사건기록, 결정·처리 생성 문
서 및 재판서 등의 보존·관리
에 필요한 각종 대장의 기재 및
보존은 검찰기록물관리시스템
에 의한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④ 전자화대상문서는 형사절차
전자문서법 제12조제1항에 따
른 보관기간이 만료된 때에 제1
항의 절차에 따라 폐기한다.

제32조(각종 대장의 전자적 처리)

---- 공소청기록물관리시스템
및 전자기록보존시스템-----
-----.

제33조(전자기록 등에 대한 적용)

전자기록 및 전자재판서에 관하
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성
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7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절차는 전자기록보존시스
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갈
음한다.